

# 사법형식의 행정작용

# 행정법관계의 종류

## 공법관계

### 공법상 권력관계 (협의의 고권행정관계)

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할 지위에서 개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, 강제, 형성 하는 관계

### 공법상 비권력관계 (단순고권관계)

권력행정의 규율수단에 의하지 X

## 사법관계

### 협의의 국고관계 :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

조달행정관계 : 공적 임무의 수행에 전제가 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작용

영리행정관계 : 공행정목적의 직접적인 수행과 관계없이 수익의 확보를 위해 행하는 활동

### 행정사법관계 : 행정주체가 사법형식에 의해 공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

# 사법관계의 개념

- 사법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  
(=광의의 국고행정)

- “국고” -

1. 권력적으로 행위하는 국가 옆에 존재하는 독립의 법인으로서의 국가를 의미
2. 사법주체로서의 국가
3. 재산권주체로서 국가
4. 경제활동에의 참여자로서 국가의 의미

- 조달작용, 영리관계 v. 행정사법작용

행정사법작용- 공행정주체가 공적 임무를 사법형식으로 수행하는 행정작용

# 행정사법개념의 특색

- 사법형식
  - 공적임무수행
  - 공법적 규율
- 예) 급부행정영역 (주택건설, 수도물공급)
  - 제한
    - 기본권 구속
    - 개별법규상의 제한
    - 권한규범에 의한 제한
    - 비례원칙
    - 부당결부금지의 우너칙
    - 경제성, 합목적성의 제한

# 조달행정과 영리활동

- 조달행정 : 공적 임무의 수행에 전제가 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작용

## - 제한

- 공법적 제한
- 기본권에 구속

- 영리활동: 국가가 공행정목적의 직접적인 수행과는 관계없이 수익의 확보를 위해 행하는 활동

## - 제한

- 경쟁관계에 있는 사인에 대한 보호